

## 광명시 조례안 입법예고

광명시의회 김운호 의원이 추진 중인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제1항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 7. 13.

**광명시의회의장**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5건 개별내용 참조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7월 18일(수)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팩스

■ 보내는 곳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의회 (우 14234)

■ 전화번호 : 02) 2680-2525, 팩스번호 : 02) 2680-2637

■ 전자우편 : chaos96@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광명시의회사무국(의사팀)

마. 문의전화 : 02) 2680-2525

## **- 입법예고 목록 -**

-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 **광명시 시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7
- **광명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2
- **광명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 **광명시 아이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2

#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
|----------|--|

발의연월일 : 2018년 7월 11일

발 의 자 : 김윤희 의원

찬 성 자 : 박덕수·제창록 의원

## 1. 개정이유

-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는 상위법령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라야 함에도, 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다른 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개정(안 제27조제5항)

## 3. 개정조례안 : 불 입

## 4. 입법예고 : 2018. 7. 13. ~ 2018. 7. 18.

##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서 : 불 입

#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제27조(과태료) ① ~ ④ (생략)<br><br>⑤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br>「광명시 법령 등 위반자에 대한<br>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br><br>⑥ (생략) | 제27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br><br>⑤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br>「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br>다.<br><br>⑥ (현행과 같음) |

###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과태료) ③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과태료 부과 등)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 광명시 시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
|----------|--|

발의일자 : 2018년 7월 11일

발의의원 : 제창록 의원

찬성의원 : 박성민·박덕수·조미수·이주희·  
한주원·김윤호·안성환·김연우·  
이일규·이형덕·현충열 의원

## 1. 제정이유

- 광명시의 미래비전을 위해 민선 7기 공약사항의 방향설정 및 확정을 위하여 광명시 시정혁신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안 제4조)
- 위원회의 기능(안 제3조제2항)
  - 시정의 비전·목표·전략 설정에 관한 사항
  -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재원조달 등 시행방안의 구체화
  - 공약사업의 연차별 목표 설정 및 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 새로운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위원장·부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각각 호선함(안 제4조제3항 및 제7조제2항)
-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안 제7조)
- 조례 존속기간 : 201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함(안 부칙 제3조)

## 3. 제정조례안 : 붙임

## 4. 입법예고 : 2018. 7. 13. ~ 7. 18.

##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16조의2

## 광명시 시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 미래비전을 위하여 공약사항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전문가 중심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공약시행 방안의 구체화 및 광명시 정책 시행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시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약사항”이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공약집 등을 통해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과 시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한 사항을 취임 이후 이를 확정된 것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약사항을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확정하기 위하여 광명시 시정혁신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정의 비전·목표·전략 설정에 관한 사항
2.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재원조달 등 시행방안의 구체화
3. 공약사업의 연차별 목표 설정 및 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각 분야의 저명인사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시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시장을 보좌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을 최종 검토·협의·결정하기 위하여 이를 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8조(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안별로 위원회 구성의 경력과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또는 분과위원회별로 자문을 하거나 전문가 및 시민토론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간사는 공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 위원 및 관계공무원·전문가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결과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활동 결과를 백서로 정리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8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광명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  |
|----|--|
| 의안 |  |
|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8년 7월 12일

발 의 자 : 한주원 의원

찬 성 자 : 김윤호·안성환·김연우·이일규·  
이주희·박성민·이형덕·제창록·  
현충열 의원

## 1. 제안이유

- 자치분권에 관한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명시하고,
- 광명 자치분권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시민의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치분권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자치분권협의회 운영(안 제8조 ~ 제12조)
  -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
  - 기능 :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된 사업의 협의·조정 사항의 자문·심의
- 광명 자치분권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13조 ~ 제22조)
  - 운영체제 : 학장 및 운영위원회
  - 운영인력 : 학장(1명) 및 전문관(2명 이내)은 외부전문가 또는 공무원으로 위촉(임명)
  - 운영위원회 : 15명 이내로 구성, 광명 자치분권대학의 운영계획 및 교육 과정에 관한 사항 자문·심의
  - 예산지원 :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위탁운영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 3. 개정조례안 : 불 임

## 4. 입법예고 : 2018. 7. 13. ~ 7. 18.

##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광명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광명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명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명시의 자치역량 강화와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자치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시민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의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가가 추진하는 자치분권정책에 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개발 및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시민자치교육 및 시민참여 확대 방안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시장은 시민, 시민단체, 언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참여의 확대)** 시장은 시민의 자치분권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분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토론회
2. 자치분권 홍보, 활성화 추진 및 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사업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학술 활동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2장 자치분권협의회 운영

**제8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에 따라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광명시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추진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추진활동과 관련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항의 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추진 및 지원을 위해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분권 관련 전문가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시민, 시의회,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관계기관, 관계공무원 등 각 분야별 자치분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의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실무 담당자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사망, 국외이주,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3장 광명 자치분권대학 운영

**제13조(자치분권대학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광명 자치분권대학(이하 “자치대학”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치대학을 운영하기 위해 학장 및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학장은 자치대학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며 자치대학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학장 및 전문관)** ① 시장은 자치대학을 운영하기 위해 자치대학에 학장 및 전문관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학장(1명) 및 전문관(2명 이내)을 외부전문가 또는 공무원으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자치분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부학장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자치대학 운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 명칭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치대학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분석 및 효율적 운영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자치대학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위원의 해촉)** 위원회 위원의 해촉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치분권 담당자가 되며,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업무를 처리한다.

**제20조(수료 및 수료자 혜택)** ① 학장은 교육과정 중 교육시간의 75퍼센트 이상을 이수한 교육생에게는 학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② 시장은 수료자에게 각종 위원회 및 자치대학 강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제21조(예산지원)** 시장은 자치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본적 운영 경비 외에 교육에 필요한 재료비 등의 일부를 교육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22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자치대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와 위탁 업무의 한계, 위탁받는 자의 책임, 위탁의 취소, 그 밖에 위탁조건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광명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
|----------|--|

발 의 일 자 : 2018년 7월 12일  
 발 의 의 원 : 안성환 의원  
 찬 성 의 원 : 조미수·박덕수·한  
 주원·김연우 의원

## 1. 제안이유

- 기존에 지원되지 않던 첫째 아이 출산가정에도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둘째 아이의 경우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셋째 아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넷째 아이 이상은 500만원으로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여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과 저출산 위기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전의 출산장려금 지원금을 인상하여 출산장려를 도모(안 제3조)

|          | 개정 전  | 개정 후  |
|----------|-------|-------|
| 첫째 아이    | -     | 100만원 |
| 둘째 아이    | 30만원  | 200만원 |
| 셋째 아이    | 50만원  | 300만원 |
| 넷째 아이 이상 | 100만원 | 500만원 |

## 3. 개정조례안 : 붙임

## 4. 입법예고 : 2018. 7. 13. ~ 2018. 7. 18.

## 5. 참고사항

- 소요예산 : 별첨

## 광명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기준)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 아이 1,000,000원, 둘째 아이 2,000,000원, 셋째 아이 3,000,000원, 넷째 아이 이상 5,000,000원을 출산 장려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쌍태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산 순서에 따라 영아별로 각각 지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9월 1일 전에 출생한 신생아 또는 입양한 입양아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제3조(지원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 또는 입양한 입양아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제3조(지원기준) <u>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둘째 아이 300,000원, 셋째 아이 500,000원, 넷째 아이 이상 1,000,000원을 출산 장려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출생아가 쌍태아인 경우 출산 순위에 따라 지원한다.</u> | 제3조(지원기준) <u>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 아이 1,000,000원, 둘째 아이 2,000,000원, 셋째 아이 3,000,000원, 넷째 아이 이상 5,000,000원을 출산 장려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쌍태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산 순서에 따라 영아별로 각각 지급한다.</u> |

# 광명시 아이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
|----------|--|

발 의 일 자 : 2018년 7월 12일

발 의 의 원 : 박성민 의원

찬 성 의 원 : 이주희·김윤희·이형덕 의원

## 1. 제정이유

- 광명시에 거주하는 6세 미만의 아동 중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감액 지급되는 아동에게 광명시 아이키움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아동수당법 시행령」에 따른 소득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여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아동
  -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동수당이 감액 결정된 아동
- 지급기준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신청 및 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안 제6 ~ 7조)

## 3. 제정조례안 : 붙임

## 4. 입법예고 : 2018. 7. 13. ~ 7. 18.

##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받쳐서 : 「아동수당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광명시 아이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에 거주하는 6세 미만의 아동 중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감액 지급되는 아동에게 광명시 아이키움수당을 지원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6세 미만의 아동에게 그 보호자와 가구원의 소득이나 재산, 가계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아이키움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아동에게 아동수당과 관계없이 또는 추가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수급아동”이란 법 제9조 및 이 조례에 따른 사회보장적 금전의 지급이 결정되어 그것을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아동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아동수당 및 아이키움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수당 및 아이키움수당에 관한 사항을 광명시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지급대상)** 시장은 현재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6세 미만의 아동 중 「아동수당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소득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여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영 제3조에 따라 아동수당이 감액 결정된 아동의 보호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아이키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기준 및 지급액)**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아이키움수당 지급을 결정한 아동에게는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이키움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③ 아이키움수당은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며,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아동수당이 감액 지급되는 아동에게는 1인당 매월 5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신청)** 아이키움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보호자의 대리인은 별지 서식에 따른 아이키움수당 지급신청서를 아동의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시기 등)** ① 동장은 제6조에 따라 접수한 지급신청서에 대하여 지급대상자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전자정보시스템에 등록한 후 시장에게 지급신청서를 송부한다.

② 시장은 제6조의 요건을 검토하고 아이키움수당의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③ 아이키움수당은 매월 25일에 개인별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제8조(지급정지 및 환수 등)** 아이키움수당의 지급정지, 수급권의 상실 및 환수는 법 제13조,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법 제6조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신청자는 아이키움수당 지원사업도 지급 신청한 것으로 본다.



## □ 아동수당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등)** ① 아동수당은 6세 미만의 아동에게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이나 재산, 가구 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세 미만의 아동은 이 법에 따른 지급 대상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아동
2.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아동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

③ 아동수당은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되,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경제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일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①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보호자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대한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신청의 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아동수당의 지급 결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조사·질문 등을 거쳐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하여 평가한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재산 수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이 법에 따른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여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결정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아동수당지급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정·결정 취소의 절차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결정한 아동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수급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1.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당시부터 국외에 체류 중인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은 해당 아동이 국외로 출국한 날(해당 아동이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 아동이 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기산(起算)한다.
2. 수급아동이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아동수급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 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수급아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 수급권을 상실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6조(아동수당의 환수)**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급한 아동수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아동수당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
2. 제13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아동수당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아동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환수 대상자에게 지급할 아동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할 아동수당(이하 "환수금"이라 한다)과 상계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하고, 그 사유를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7조에 따른 조사·질문을 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환수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2. 환수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조(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 기준과 방법)** ① 「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은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액(제2항에 따른 소득과 제3항에 따른 재산의 환산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소득액"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가구의 아동으로 한다.

**제3조(아동수당 지급 금액의 감액)** 수급아동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액과 수급아동 1인당 10만원의 아동수당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 □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4조(대리인)** 법 제6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